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6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1. 1. 18.
발 의 자 : 김동규 의원 외 10인

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일수를 늘리고자 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연간 회의 총일수를 당초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.
(안 제2조)
- 예산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되는 정례회의 회기를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3조제1항)
-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연장을 감안하여 집회일을 당초 12월 2일에서 11월 28일로 앞당기고자 함. (안 제4조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-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, 제3조,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2조 단서(후단)를 삭제한다.

제2조 중 “90일”을 “100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40일”을 “45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2월 2일에”를 “11월 28일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이외의”를 “외의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·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<u>90일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에 따라</p> 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에 따른<u>100일</u>..... <단서삭제></p>
<p>제3조(회기) 법 제44조·제45조·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, 회의일수는 합하여 <u>40일</u> 이내로 한다. 2. (생략) <p>제4조(정례회 집회)(생략) 1. (생략) 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에 따른 1.<u>45일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정례회 집회)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11월 28일</u>-----</p>
<p>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</p>	<p>제5조(심의) ①.....</p>

<p>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.....에 따른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②에 따른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<u>이외의</u> 정 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<u>관하여</u> 필 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준용)<u>외의</u>....<u>필요</u> <u>한</u>.....</p>